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http://mfds.go.kr http://www.motie.go.kr	**보도참고자료**	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20. 2. 28.(금)	담당부서	식약처 마스크총괄관 수급지원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장비과
담당과장	신준수 과장(043-719-3301) 황병소 과장(044-203-4310)	담 당 자	권대근 사무관(043-719-3312) 천서현 사무관(044-203-4311)

국내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수출제한 예외조치 유예

□ **국내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마스크 수출제한 예외를 당분간 인정하지 않기로** 함.(제5차 마스크 등 시장교란행위 방지 관계부처 회의(2.28) 결과)

○ **'수출제한 예외조치'의 시행시기**는 **국내 마스크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**할 예정임.

【마스크 수출제한 및 예외조치 관련 주요내용】

▲ 2.26(수)부터 마스크 수출은 **①마스크 생산업자만 ②당일 생산량의 10% 이내**로 제한

▲ 다만, 인도적 목적 등을 위해 마스크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조치 가능

□ 참고로, **5일 이상 마스크를 과다하게 보유**하고 있는 경우, 「물가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에 의거 **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**에 처해질 수 있음

【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 금지 적용대상 및 판단기준 】

▲ (적용대상) 보건용 마스크 생산자, 판매자

▲ (매점매석 판단기준) 조사 당일 기준 **'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%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**

* 19년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%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,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·판매하지 않는 행위

▲ (조사·단속) 신고센터(식약처, 각 시도) 및 합동단속반(식약처, 공정위, 국세청, 각 시도)

▲ (적용시한) '20.2.5일 0시부터 `20.4.30일까지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수급지원팀 권대근 사무관(☎ 043-719-3312),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장비과 천서현 사무관(☎ 044-203-431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